

● 제290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5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
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2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1144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(제출자) 및 제안경과(제출경과)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출 일 : 2019. 10. 16.
- 다. 회 부 일 : 2019. 10. 22.

2. 제안이유(제출이유) 및 주요내용

가. 제출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(제출 취지)

-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를 결제시 보조기기센터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.

<보조기기센터 현황>

| 센터명 | 위탁법인 | 위치(면적) | '18년 주요실적(연인원)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동남 | (재)푸르메 | 강동구 고덕로 | 128,754 |
| 동북 | (사)한국뇌성마비복지회 | 노원구 덕릉로 707길 96 | 58,780 |
| 서남 | (사)한국뇌성마비복지회 |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| 56,713 |
| 서북 | (재)푸르메 | 마포구 월드컵북로 404 | 4,052 |

※'18년 주요 실적 내역 : 상담평가, 대여, 후원연계, 제작 등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나.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 현황

-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이 제출한 조례 대상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이용실적을 살펴보면, 2019년 8월말까지 104개 시설 총 114,151건의 제로

페이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41억 원의 할인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
- 월별 제로페이 사용금액을 통해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5월 927백만원 → 6월 832백만원 → 7월 1,036백만원 → 8월 1,346백만원

〈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〉

(단위 : 천건, 백만원)

| 구분 | 계 | | 5월 | | 6월 | | 7월 | | 8월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전체결제(A) | 2,010 | 28,341 | 482 | 7489 | 472 | 6,451 | 483 | 7,164 | 573 | 7,237 |
| 제로페이(B) | 114 | 4,141 | 28 | 927 | 31 | 832 | 23 | 1,036 | 32 | 1,346 |
| 이용률(B/A) | 5.8% | 12.4% | 5.8% | 12.4% | 6.7% | 12.9% | 4.8% | 14.5% | 5.5% | 18.6% |
| 할인금액 | 500 | | 117 | | 106 | | 120 | | 157 | |

출처: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,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연장 추진계획,

- 동 개정안 대상 시설인 4개 보조기기센터의 제로페이 할인실적을 살펴 보면, 14건 178천원으로 전체 결제 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은 18.4%로 나타났음.

〈개정안 대상 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〉

(단위 : 건, 천원)

| 연번 | 조례명 | 시설수 | 제로페이 결제 | | | 제로페이 할인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| | | 건수 | 금액 | 비율 | 건수 | 금액 |
| 1 | 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| 4 | 14 | 178 | 18.4 | 14 | 18 |

※ 비율 :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/ 시설별 전체 결제액 × 100

※ 주 : 비율 =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/ 시설별 전체 결제액 × 10

-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사항 1위는 결제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나타난 바, 개정안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할 것임.

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(서울연구원)

- 제로페이 선호 요인 : 할인혜택 (58%), 프로모션 (21%), 홍보 등(20.5%)
- 할인혜택 만족도 : 매우만족(13.5%), 만족(31.8%), 보통(38%.0),
불만족(13.5%), 매우 불만족(3.1%)

「제로페이,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제공하고 사용처 확대 노력·사용 편의성 증진 필요」, 서울연구원, 2019

3 종합 검토 의견

-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 시,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이용료를 2019년 말까지 감면토록 하던 것을, 2020년 말까지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로페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